

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(제21조제1항, 제38조제1항,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취소의 경우에는는 그러하지 않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해당 전기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·교환·환급·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
- 마.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인증표시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안전인증취소 등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 시	2회 위반 시	3회 위반 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1호	인증취소	-	-
나.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2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다.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	법 제11조제1항제2호	인증표시	인증표시	인증취소

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호	사용금지 2개월	사용금지 4개월	
라.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인증대상제품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조한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·변경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2호	인증취소	-	-
마.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3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바.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4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사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5호	인증취소	-	-
아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·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6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자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6호	인증취소		
차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7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카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8호	개선명령	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	인증취소
타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·보관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8호	인증표시	인증취소	-

		사용금지 2개월		
과.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9호	인증취소	-	-
하.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10호	인증취소	-	-
거.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어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조제1항제10호	인증취소	-	-

3.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 시	2회 위반 시	3회 위반 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1호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	-	-
나.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2호	개선명령	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
다.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2호	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	-
라.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	법 제20조제1항제2호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	-	-

변경한 경우				
마.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3호	개선명령	안전확인 신고표시 사용금지 2개월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
바.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조제1항제4호	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	-	-

4.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 시	2회 위반 시	3회 위반 시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1호	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	-	-
나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2호	개선명령	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2개월	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6개월
다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2호	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	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사용금지 6개월	-
라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2호	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	-	-
마.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제3호	개선명령	공급자적합성확인	공급자적합성확인

우			표시 사용금지 2개월	표시 사용금지 6개월
바.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27조제1항 제4호	공급자적합 성확인표시 사용금지 6개월	-	-

5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개선명령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조문	행정처분기준
가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 제1호	개선명령
나.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 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31조제1항 제2호	개선명령